#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98

발의연월일: 2020. 10. 5.

발 의 자:윤재갑・홍문표・조경태

김수흥 · 서영교 · 이개호

이재정 • 전용기 • 이정문

강병원 · 위성곤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일부 어종에 대해서만 살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기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의무적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고 있어 일부 냉동수산물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냉동수산물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수입수산물의 경우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며,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 법률 제 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수산물은 그 명칭을 한글화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여야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냉동상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원산지 표시) ①・② (생	제5조(원산지 표시)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③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	
하는 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u>나에 해당하는 경우에</u>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	
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u>표시하여야 하며, 수</u>
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입수산물은 그 명칭을 한글화하
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	는 등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여
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	야 한다
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	
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	
시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
	물(냉동상태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u>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u>
	<u>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u>
	포함한다)하는 경우
<u> &lt;신 설&gt;</u>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